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 
2009.05.12 ( 화 ) 10:00

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#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민경환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5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5월 12일

3. 제안 이유

- 다자간 무역협상과 세계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(FTA)이 추진되고 있어 농업분야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농어업경영의 전문화, 농어업인의 소득안정, 농어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,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어업 관련 산업 육성과 농촌주민의 복지혜택 향상 등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.
- 이에 따라 근거 법령인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등의 육성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- 가. 농어업의 육성·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종합적 시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의 설정(안 제3조)
- 나. 농어업·농촌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- 다.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농어업인, 식품산업 종사자, 소비자 등의 책임 규정(안 제5조~안 제7조)
- 라.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분야별 지원 계획의 수립 등
  - 1) 기본원칙의 수립과 추진(안 제8조)
  - 2) 지원범위와 방법규정(안 제9조)
  - 3)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지원범위(안 제10조)
  - 4) 농어업 경쟁력 강화, 경영안정, 농촌개발, 복지증진과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지원범위(안 제11조~안 제13조)
  - 5) 벤처농어업의 육성과 지원(안 제14조)
  - 6)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(안 제15조)
  - 7) 농어업·농촌에 관련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(안 제16조)
- 마.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
  - 1) 지원신청에 관한 규정(안 제17조)
  - 2) 지원금 교부방법, 사후관리 등(안 제19조~안 제20조)
- 바.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, 구성과 운영방법(안 제21조~안 제23조)

## 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'은 동 조례안의 근거 법령인 「농업·농촌기본법」이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충청북도 농정의 기본방향과 식품산업 등의 육성시책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
  
- 다만, 본 조례의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은 없는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.